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를 위한 병해충 이용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19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시험 · 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를 위한 병해충 이용	2
2.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재위임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5.
3. 회 부 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해충의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1조의8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를 위한 병해충 이용

개정안은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8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u><신설></u>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 ----- -----등(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8(병해충의 연구 등)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등은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병해충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2의2. (생 략) 3. 4.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이용 및 신고 절차·방법,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의8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병해충 종류 및 이용 목적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구소등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일부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¹⁾이 발생하여 폐원하게 되는 등 병해충²⁾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찰·방제할 수 있는 약제·기술 등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구소등에서도 병해충을 이용하여 이를 위한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임.

1) 사과·배·모과 등 장미과(科) 식물에서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원인균인 'Erwinia amylovora' 감염을 통하여 나타남

2)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최근 10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

(단위: 호, ha)

연도	발생			방제	
	농가	면적	기초지자체 수	농가	면적
2015년	43	42.9	3	68	59.9
2016년	17	15.1	2	32	19.7
2017년	33	22.7	2	55	31.8
2018년	67	48.2	6	135	80.2
2019년	188	131.5	10	188	131.5
2020년	744	394.4	15	747	395.1
2021년	618	288.9	22	619	289.4
2022년	245	108.2	19	245	108.2
2023년	234	111.8	24	234	111.8
2024년	162	86.9	24	162	86.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현행법은 병해충을 검역 및 방제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병해충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병해충이 발생하면 이를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병해충의 검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수입 후 관리장소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시험연구용으로 병해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소등의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 목적의 병해충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³⁾⁴⁾

3)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4) 참고로, 해당 허가 권한은 현재 「식물방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권한 위임을 통하여 식물검역기관의 장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병해충의 방제와 관련하여는 이와 같은 연구소등의 병해충 이용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병해충을 방제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 목적의 병해충 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연구소등이 병해충을 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 절차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관련하여 병원체 등의 이용을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병원체 중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등에 관한 신고 제도 및 취급시설 설치·운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리한 병원체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또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시험·연구하려는 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에 이용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임.

【 병원체 관리에 관한 입법례 】

법률 (병원체)	주요 입법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u>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u>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u>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② <u>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u>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u>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③ <u>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u>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u>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u>질병관리청장의 허가</u>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u>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u>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u>필요한 시설</u>(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u>설치·운영</u>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u>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u>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u>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u>하거나 <u>신고</u>하여야 한다. ② <u>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u>은 <u>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u>에는 <u>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u>하거나 <u>신고</u>하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u>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u>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u>고시</u>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개정안은 병해충 이용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연구소등이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병해충을 이용한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를 촉진함으로써, 과수화상병 등의 병해충 방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제도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제31조제1항⁵⁾에 따라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구소등이 신고만 하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연구 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특정한 병해충에 대한 방제 규정이라기보다는,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로 구성되는 ‘제3장 방제’의 첫 규정으로서 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신고 대상 병해충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는 달리 모든 병해충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병해충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방제 분야의 ‘방제 대상 병해충’ 뿐만 아니라 검역 분야의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대상 병해충의 범위를 두텁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현행법상 병해충 분류 】

분야	구분	내용
전체	병해충	가. <u>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u> 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u>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u>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u>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u>
검역 (제2장)	병해충 중 규제병해충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u>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u>
	규제병해충 중 검역병해충	<u>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u>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 <u>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에 해당함</u>
	규제병해충 중 규제비검역 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u>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u>
	병해충 중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u>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u>
방제 (제3장)	병해충 중 방제 대상 병해충	현행법 제32조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이 수립된 병해충 ※ <u>과수화상병은 방제 대상 병해충에 해당함</u>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가공

참고로, 이와 같이 수정하지 않고 모든 병해충에 대하여 이용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이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중심으로 검역 또는 방제 제도를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시험·연구 등 목적의 병해충 이용에 대하여 신고 제도를 통한 관리를 규정하지만, 현행법이 시험연구용 병해충 ‘수입’에 대하여는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에 차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이용 신고제와 현행법의 수입 허가제가 모두 병해충의 시험·연구 등에 대한 관리제도인 점, 병해충 보관 시 그 출처(국내·해외)와 무관하게 동등한 안전관리가 요구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차등을 두는 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사람·동물 대상의 병원체에 관하여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에서는 병원체 이용에 대하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규정하는 점, 단순 이용과 달리 수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병해충의 국내 ‘신규·추가’ 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신고 제도로 규정하여 병해충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신고사항으로 두되, 해당 병해충을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연구소등의 병해충 이용 시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병해충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소등의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 과정에서 이들 병해충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명시하여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용 병해충 수입허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여, ‘관리장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⁶⁾

유사 입법례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병해충 시험·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연구 과정에서 병해충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시행령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31조의8(병해충의 연구 등)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연구소등은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병해충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8(병해충의 연구 등) ① ----- ----- ----- ----- ----- 다만,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상 병해충을 이용하여려는 경우----- ----- ----- ---.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이용 및 신고 절차·방법,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신고의 절차·방법이나 시설, 준수사항 등 병해충의 보존·관리에---

2.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재위임

개정안은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u>식물검역기관의</u>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u> ----- ----- -----.

현행법은 제46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⁸⁾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식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⁹⁾)의 장에게 위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현행법 제46조제2항은 재위임의 주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여, 또 다른 수입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기관에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¹⁰⁾

8) 「식물방역법」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9)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약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함)

10) 다만, 현행법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현행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권한 재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주체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그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의 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재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의 제도의 균형성 측면을 제고하고, 소속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앞서 검토한 안 제31조의8에 따른 병해충 이용 신고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면, 이 역시 개정안에 따른 재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46조제1항과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다음의 표와 같음.

【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

연번	위임된 권한	
	모법 근거규정	권한 내용
1	법 제30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 내의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신고 접수
2	법 제31조	병해충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
3	법 제31조의5	‘공항·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분포조사
4	법 제31조의7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5	법 제32조제5항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

연번	위임된 권한	
	모법 근거규정	권한 내용
6	법 제33조의4제1항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7	법 제33조의5제1항	예방교육 실시
8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방제명령 및 식물방제관(지자체 제외)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9	법 제37조의2제1항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
10	법 제38조	방제명령 등에 따른 손실보상
11	법 제39조제1항·제2항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 보조
12	법 제42조제1항·제2항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13	법 제43조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
14	법 제50조제1항제4호	방제명령(폐기명령 제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5	법 제50조제1항제4호	식물방제관(지자체 제외)의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6	법 제50조제1항제4호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의 병해충 발생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7	법 제33조의5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18	법 제33조의5	병해충 예방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9	법 제43조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가공

한편,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하는 사항이 ‘위임’이 아닌 ‘재위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 대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하도록 현행법상 문언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u>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u>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u> ----- ----- ----- --.	② <u>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u> ----- ----- ----- --.

문 의 처
02)6788-5416